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9 -1136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8(2007.06.07.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-104(2012.07.19.)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-170(2012.11.26.)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된 후 제2018-109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
2019년 9월 26일

성 북 구 청 장 인**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·공고****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- 가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 (구:도시환경정비사업)
- 나. 사업의 명칭 :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(구: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)

2. 사업시행자

- 성 명 : 디에스디삼호(주) 대표자 이윤권 [구: (주)디엔지파트너스]
-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, 14층(인계동, 마라톤빌딩)
(현장사무실 ☎ 985-9550)

3. 공람 · 공고 내용

- 가. 사업명칭 :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성북구 길음동 524-87번지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28,215.50㎡
- 라. 건축계획

- 택지1 : 지하5층/지상29층, 3동, 공동주택(아파트) 4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7,707.7㎡, 공원 498.7㎡, 공공공지 554.0㎡

바. 주요변경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
시행자	(주)디엔지파트너스	디에스디삼호(주)	주민총회 의결
자치규약	시행자, 주소 및 용어변경(사업시행인가→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)		주민총회 의결

4. 공람기간 : 2019. 9. 26. ~ 2019. 10. 10. (14일간)

5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 2241-2855)
 (주)디엔지파트너스 사무실(☎ 985-9550)

6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(주)디엔지파트너스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
 하시기 바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
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